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주요업무보고



2019. 11.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

차 례

▶ 일반현황

▶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 주요업무

1.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공제급여 지급)
2.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3.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비용 지원(교육감 등)
4.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5. 학교폭력 피해 지원



일반 현황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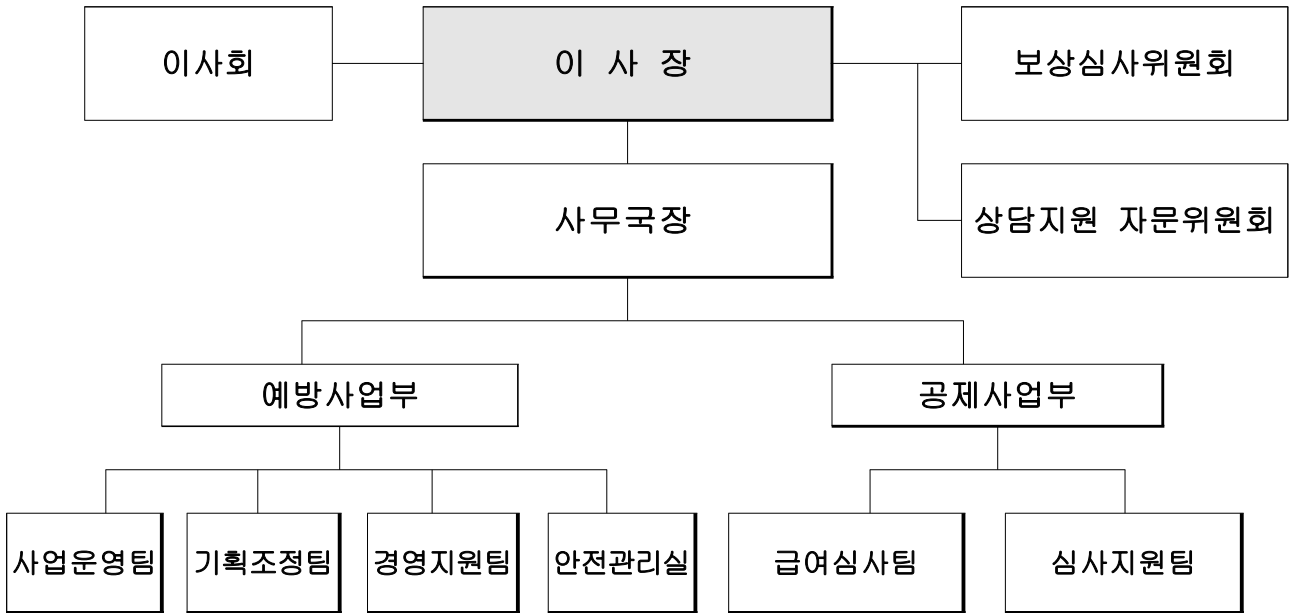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통한 피공제자 보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통한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의 신속·적정한 보상·지원을 통한 학교안전망구축
-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연혁

- '87. 12. 09.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88. 03. 01. 보상업무 개시
- '06. 03. 01. 소방점검사업 개시
- '07. 09. 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07. 09. 03.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설립등기
- '12. 04. 01. 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
- '15. 01. 2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
- '16. 09. 01. 여행자공제사업 개시

□ 조직 및 정·현원

○ 2부 5팀 1실



○ 정·현원

- 특정직 및 일반직

(단위: 명)

구분	특정직	일반직				계
	국장	부장	팀장	대리/주임	소계	
정원	1	2	5	7	15	15
현원	1	2	4	8	15	15

- 계약직

(단위: 명)

구분	실장	과장	팀장	대리	주임	사원	계
정원	1	4	5	5	6	5	26
현원	1	4	3	4	6	2	20

□ 시설 현황

○ 소재지: 영등포구 양산로 107 3층, 7층

○ 건물: 543m²

임원 현황

- 이사장: 김형배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임기: 3년 ('19.9.1. ~ '22.8.31.)
-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장	학부모	교수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전문의	계
이사	7	2	2	2	1	-	1	15
감사	-	-	-	1	-	1	-	2
계	7	2	2	3	1	1	1	17

보상심사위원 현황

- 위원장: 서종일 (신목고등학교 교장)
- 임기: 2년 ('19.9.19. ~ '21.9.18.)
-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장	학부모	교수	공무원	변호사	전문의	보험전문가	계
인원	4	2	2	1	2	3	1	15

상담지원자문위원 현황

- 위원장: 이영식 (중앙대학교병원 전문의)
- 임기: 2년 ('18.11.1. ~ '20.10.31.)
-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전문의	변호사	상담전문가	교수	공무원	학부모	계
인원	2	1	1	1	1	1	7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현황

(단위: 교, '19.9.30. 현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기타학교	합계
가입대상교	819	600	385	320	30	12	2	28	2,196
가입교	803	600	385	320	30	12	2	28	2,180
미가입교	16	-	-	-	-	-	-	-	16

□ 공제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	외국인	기타	계	전년대비 증감율	
2013	건수	725	3,774	3,865	2,917	65	35	14	32	11,427	-
	금액	67,035	1,077,019	2,352,165	2,426,103	26,281	134,274	7,998	13,471	6,104,346	-
2014	건수	1,026	4,347	4,506	3,437	124	25	16	20	13,501	18.1%
	금액	100,143	1,683,590	1,917,063	2,841,416	37,738	29,853	8,506	6,135	6,624,444	8.5%
2015	건수	1,080	4,305	4,339	3,577	95	27	8	27	13,458	△0.3%
	금액	99,278	945,155	1,871,357	1,751,840	23,375	11,672	1,234	8,830	4,712,741	△28.9%
2016	건수	997	4,378	3,919	3,360	80	22	8	19	12,783	△5.0%
	금액	352,159	1,405,546	1,362,424	1,646,869	19,283	5,742	1,008	9,036	4,802,067	1.9%
2017	건수	1,008	4,319	3,948	3,175	72	28	11	24	12,585	△1.5%
	금액	224,293	1,265,548	1,383,804	2,346,297	73,431	41,403	3,165	6,260	5,344,201	11%
2018	건수	884	4,261	3,581	2,995	88	29	7	19	11,864	△5.7%
	금액	125,544	857,802	1,679,477	3,176,492	20,622	15,043	772	2,926	5,878,678	10%
2019	건수	712	3,538	2,921	2,387	57	18	1	30	9,664	-
	금액	117,759	826,978	1,055,466	2,238,380	14,749	14,377	77	8,734	4,276,520	-

※ 2019년도 9월 30일 기준

○ 2019년도 공제급여 지급 세부 현황

- 총괄 현황

구분	2019년(1.1.~9.30.)	2018년(1.1.~9.30.)	비 고
건수	9,664건	8,524건	1,140건(13.4%) 증가
금액	42억 7천만원	47억 1천만원	4억4천만원(9.3%) 감소

- 시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 19.1.1. ~ 9.30.)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체육수업	106	941	1,155	1,003	10	4	-	8	3,227
실험실습	-	17	24	23	-	-	-	-	64
교과수업	306	316	163	91	20	2	-	-	898
청소시간	2	7	18	14	-	-	-	-	41
휴식시간	85	1,460	961	571	16	4	1	11	3,109
방과후시간	174	507	468	558	8	4	-	9	1,728
기 타	39	290	132	127	3	4	-	2	597
계	712	3,538	2,921	2,387	57	18	1	30	9,664

- 장소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 19.1.1. ~ 9.30.)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교실	406	843	354	231	21	4		4	1,863
운동장	95	940	1,243	1,104	6	6		13	3,407
체육관	70	721	677	606	7		1	3	2,085
계단	23	340	193	135	8	5		5	709
복도	61	453	264	103	10	1		1	893
기타	57	241	190	208	5	2		4	707
계	712	3,538	2,921	2,387	57	18	1	30	9,664

- 상해 유형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 19.1.1. ~ 9.30.)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사 망	-	-	1	1	-	-	-	-	2
장 해	1	3	5	20	-	-	-	-	29
골 절	60	696	592	383	13	9	1	6	1,760
열 상	387	644	260	244	26	-	-	5	1,566
관절염좌	70	445	393	664	8	1	-	9	1,590
기 타	194	1,750	1,670	1,075	10	8	-	10	4,717
계	712	3,538	2,921	2,387	57	18	1	30	9,664

□ 예산현황

(단위: 천원, '19.9.30. 현재)

세 부 사 업	2019년도		2018년도 최종예산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D=C/B))
	본예산(A)	예산현액(B)			
공제급여	6,820,000	6,820,000	5,883,000	4,276,520	62.7%
보상심사위원회	52,600	52,600	30,400	23,874	45.4%
소송업무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비용지원)	432,084	432,084	145,800	131,590	30.5%
예방사업	605,030	605,030	678,000	163,239	27.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71,380	71,380	160,020	8,060	11.3%
학교폭력 피해 지원	112,479	112,479	120,460	88,632	78.8%
기관운영비	1,582,753	1,582,753	1,546,804	924,329	58.4%
계	9,676,326	9,676,326	8,564,484	5,616,244	57.8%

□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19.9.30. 현재)

주요업무명	2019년도		2018년도 최종예산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D=C/B))	쪽수
	본예산 (A)	예산현액 (B)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공제급여 지급)	6,820,000	6,820,000	5,883,000	4,276,520	62.7%	10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52,600	52,600	30,400	23,874	45.4%	12
소송업무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비용지원)	432,084	432,084	145,800	131,590	30.5%	14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71,380	71,380	160,020	8,060	11.3%	16
학교폭력 피해 지원	112,479	112,479	120,460	88,632	78.8%	18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 업무 평가

- 요양급여 지급률 인상을 통한 적정수준 보상 노력
 - 요양급여 비급여 심사기준 열거형 부지급 기준으로 전환

(단위: 천원, '19.9.30.현재)

구분	2019		2018	
	건수	지급액(지급률)	건수	지급액(지급률)
요양급여	9,633	2,998,611(74%)	8,489	2,414,885(61%)

-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서비스 개시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학부모 간의 분쟁사건에 공제회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조정·해결
 - ※ 2019년 총 8건 신청, 6건 조정 완료, 2건 진행
- 학교안전사고 소송 청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¹⁾
 - 법령상 장해급여 세부기준의 미비로 제기되는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해등급 세부기준 법제화 작업 진행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령개정 TF」 참여 및 개정안 도출 완료
 - ※ 교육부로 법령 개정 계획안 최종본 전달('19. 8. 14.)
- 학교폭력 구상권 행사에 따른 가해학생 측 민원 개선²⁾
 - 피해학생 지원에 따른 가해학생 측 구상금 납부에 근본적인 불만이 있음
 - 관련 법률의 규정, 가해자 배상책임의 원칙,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가해자 구상은 불가피
 - 다만 구상금 안내 시 행정절차상 오류를 방지하고자, 우편 발송전 주소 및 관련내용을 간략히 유선으로 전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진행 중에 있음

1)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공제회에서는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가해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계

- 학교안전법 법령 목적에 맞는 적정보상 실현 필요
 - 비급여 일부 보상에 따른 사회적 분쟁비용의 감소,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치료비 보장 범위 확대 필요
-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등 필요
 - 교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 다변화
 - 조정대상으로서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을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부모간 분쟁 여부 또한 서비스 대상으로서 검토 필요
- 공제급여 보상관련 학교안전법 개정 필요
 - 공제급여 청구서류 개선, 장애등급 세부기준 법제화 등 법령개정이 선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

□ 개선 방향

- 요양급여(치료비) 지급기준 전환 및 지급률 확대
 - 열거형 지급기준 → 포괄형 지급기준 전환

- 열거지급형: 열거 항목 지급 원칙, 열거 되지 않은 항목 제한
- 포괄지급형: 모두 지급이 원칙, 열거 항목 제한

- 법령개정 연계 공제급여 청구 편의성 증대
 - 청구서류 관련 개정 이후 스마트폰 청구 방식 등 수요자 편의증대를 위한 절차 운영 예정
- 분쟁조정서비스, 학교안전사고 상담지원 사업 등 지속홍보
 -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을 다각화(대중매체, SNS 등 홍보)

1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공제급여 지급)

□ 사업 개요

- 목적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지원범위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장해급여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지급하는 비용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
위로금	학교안전사고 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비용

-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 의무가입자: 유·초·중·고등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 임의가입자: 외국인학교의 장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요양급여	연중	12,500건
장해급여		30건
간병급여		2건
유족급여		1건
위로금		1건

추진 실적

- 요양급여 지급 : 9,633건, 2,998,611천원 지급
 - 건수 전년대비 13% 증가, 지급률 13%p 증가
- 장해급여 지급 : 31건, 1,277,908천원 지급
 - 건수 전년대비 11% 감소, 지급액 10억 2천만원 감소

향후 추진 일정

- '19.10~12월: 연중수시 접수, 신속 심사 및 지급
 - 연간안전사고접수건수: 약 20,000건(월별 약 1,600건)
 - 연간요양급여처리건수: 약 11,000건(월별 약 950건)
- 장해급여 결정시 적정보상을 위한 의료기관 진찰요구 및 자문 실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9.9.30.현재)

사업명	2019년도		2018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공제급여 지급	6,820,000	6,820,000	5,883,000	4,276,520	4,276,520	62.7%	62.7%
계	6,820,000	6,820,000	5,883,000	4,276,520	4,276,520	62.7%	62.7%

2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사업 개요**

○ 목적

-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 공제급여 결정권자로 하여금 법리적, 의학적 판단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실정을 고려한 재심사를 신청함으로써 피공제자 및 청구인 권익 향상에 기여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 주요내용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연중	8회 개최

 추진 실적

○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 총 4회

- 총 42건 보상심사 청구, 32건 결정완료, 10건 심사대기중
-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정 기간 준수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향후 추진 일정

- ‘19.10~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19.11~12월 중 보상심사 위원회 2회 개최 예정

구분	2018		2019	
	청구	완료	청구	완료
보상심사청구건수	88	88	42	32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9.9.30.현재)

사업명	2019년도		2018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보상심사위원회	52,600	52,600	30,400	23,874	23,874	45.4%	45.4%
계	52,600	52,600	30,400	23,874	23,874	45.4%	45.4%

※ 2018년 청구건 기준으로 2019년 예산 책정 되었으나, 요양급여 지급률 상승에 따라 보상심사 청구건수가 감소하여 금년 예산 집행률이 낮음

3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비용 지원(교육감 등)

사업 개요

○ 목적

- 공제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대응, 분쟁사항을 확정
- 공제급여 심사 시 법률,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사 전문성 제고, 수요자 만족도 향상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감 등 손해배상 판결금을 공제회가 지원하여 학교안전공제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분쟁의 신속한 종결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등

○ 주요내용

- 공제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판결금 및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급
- 공제급여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 의료자문 비용 지급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감 등 손해배상 판결금은 공제회가 판결금 전액을 선 지급하고 각 기관의 부담분을 매년 11월 말 정산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변호사선임료	연중	20건
소송비용		5건
송무활동비		20건
자문료		8건
교육감 판결금 지원		6건

추진 실적

- 변호사선임료, 소송비용 등 : 21건, 123,056천원 지급
- 송무활동비 : 22건, 1,630천원 지급
- 법률자문 : 12건, 6,550천원 지급
- 교육감 판결금: 2건, 354천원 지급

순번	사건번호	사건명	지급액(원)
1	2018가소1674206	구상금	209,337
2	2018가소2456227	구상금	144,820

향후 추진 일정

- ‘19.10~12월: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사안 관련 소송에 신속 대응
- ‘19.10~12월: 교육청 판결금 지급요청 상시 접수
- ‘19.11월: 교육감 판결금 정산 요청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9.9.30.현재)

사업명	2019년도		2018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소송 및 의료자문	432,084	432,084	145,800	131,590	131,590	30.5%	30.5%
계	432,084	432,084	145,800	131,590	131,590	30.5%	30.5%

※ 2018년 판결금 지급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9년 예산을 책정하였음. 2018년에는 대형사고에 대한 교육감 손해배상액이 확정 판결되어 4억 5천만원이 지출된 바 있으나, 2019년에는 대형사고에 대한 확정 판결이 없어 집행율이 낮음

※ 교육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등의 대한 시점을 예산수립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점, 예산을 소액으로 편성할 경우 신속한 판결금 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매년 일정액의 교육감 판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임

4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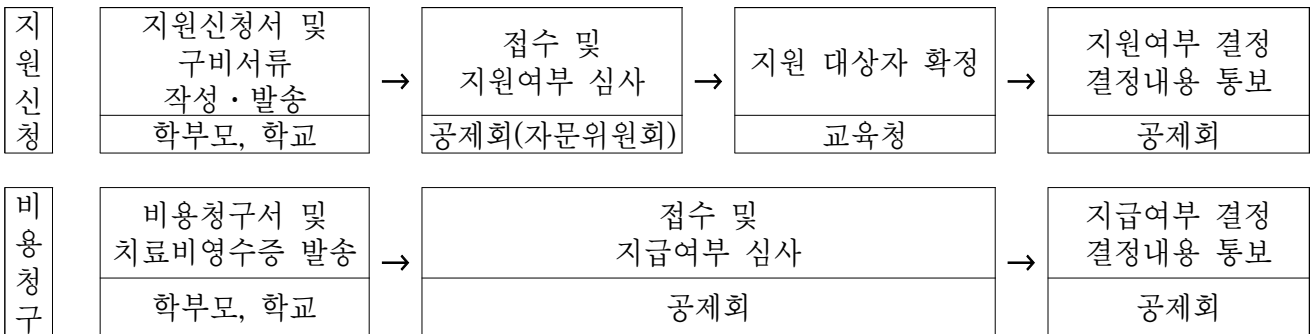
- 학교안전사고의 피해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주요내용

- 대상: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 방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기간의 연장 등 심의
- 신청절차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연중	6회 개최
지원 심청에 따른 심의		매월 10건(예상)
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 수행		
상담지원제도 홍보		4회

추진 실적

- 자문위원회 개최 : 총 3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 : 지원신청, 연장신청 등에 대한 심의 진행
- 상담지원 비용 지급 : 총 5명 지원

구분	지원신청자	지원대상자	지원내역	
			건수	금액
2019년	5명	5명	6건(5명)	2,152,200원

- 상담지원 제도 활성화 관련 홍보 : 총 3회
 - 지역신문, 홈페이지, 방송매체 활용 제도 활성화 홍보 진행 중

향후 추진 일정

- '19.10~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9.9.30.현재)

사업명	2019년도		2018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상담지원비	71,380	71,380	167,580	8,060	8,060	11.3%	11.3%
계	71,380	71,380	167,580	8,060	8,060	11.3%	11.3%

※ 2018년 상담지원실적(총 1명 190천원 지원)을 반영하여 2019년 예산 삭감이 있었으나 금년 집행률이 저조함에 2020년 예산 조정 예정임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 필요
 -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지원 실적이 미미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예정
-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지급 절차 개선 필요
 - 상담지원 대상자 심의기관(심리상담자문위원회)과 결정기관(교육청) 분리에 따라 대상자 결정에 있어 행정 지연 발생

5

학교폭력 피해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기여함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그림 1] 학교폭력 피해 지원 업무 흐름도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급	연중	55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		30건
소송 등 구상 업무 수행		100건
법률 자문 수행		'12건

추진 실적

-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 지급, 구상 절차 개선
 - 사전의견 청취 절차, 가해자 정보 확인 방법 개선
 - 가해자 정보 유지를 위한 전산 개편(시스템 화면 설계 완료)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 지급 : 106건
- 구상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수행 :106건
 - 피해학생에게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의뢰

(단위: 천원, '19.9.30.현재)

구분	2019(1.1.~9.30.)		2018(1.1.~9.3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피해지원 신청건수	106	87,934	70	66,834

향후 추진 일정

- ' 19.10~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 19.10~12월: 구상금 납부안내, 납부 최고
- ' 19.12월: 전년도 미납건 소송 진행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9.9.30.현재)

사업명	2019년도		2018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폭력피해지원	112,478	112,478	160,020	88,632	88,632	78.8%	78.8%
계	112,478	112,478	160,020	88,632	88,632	78.8%	78.8%